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합53373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5. 10. 21.

판결 선고2015. 11.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55,355,302원 및 그 중 166,793,027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786,841,116원에 대하여는 2014. 12. 5.부터 각 2015. 7.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4. 10. 7.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4. 10. 7. 접수 제753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4. 8.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0. 7. 접수 제108021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14. 10. 1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4. 접수 제2306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 내지 4항 및 피고 A은 원고에게 955,355,302원 및 그 중 166,793,027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786,841,116원에 대하여는 2014. 12.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오존(이하 '디오존'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0. 10. 29.경 신용보증원금
19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1. 10. 28.(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은 17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4. 10. 24.로 각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디오존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디오존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4. 6. 26.경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6. 26.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디오존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NH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14. 8. 29.경 신용보증원금 34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8. 24.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디오존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④ 2014. 9. 2.경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8. 24.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4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디오존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피고 A은 제1 내지 4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디오존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4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그 후 원고는, ① 2014. 10. 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디오존이 2014. 10. 7.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음을, ② 2014. 10. 16. 농협은행으로부터 디오존이 같은 날 어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음을 각 통지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① 2014. 11. 28. 중소기업은행에게 제1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대출원리금 합계 171,614,517원(= 원금 170,000,000원 + 이자 1,614,517원)을, ② 2014. 12. 5. 농협은행에게 제2 내지 4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대출원리금 합계 786,841,116원(= 제2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대출원리금 171,574,712원(= 원금 170,000,000원 + 이자 1,574,712원) + 제3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대출원리금 343,199,167원(= 원금 340,000,000원 + 이자 3,199,167원) + 제4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대출원리금 272,067,237원(= 원금 270,000,000원 + 이자 2,067,23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2014. 12. 5. 제1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대위변제금 중 4,821,490원을 회수하였다.

마. 한편, 회수된 위 4,821,490원에 대하여는 12,681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고, 본건에 따른 법적절차비용으로 5,130,450원이 발생하였는데, 위 법적절차비용 중 3,421,972원을 회수하여 남은 법적절차비용은 1,708,478원(= 5,130,450원 - 3,421,972원)이다.

바. 피고 A은, ① 피고 B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75311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 C와 사이에 자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17.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08021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③ 피고 D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4.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0635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955,355,302원 [= 대위변제금 합계 953,634,143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미회수 대위변제금 166,793,027원(= 대위변제금 171,614,517원 - 회수금 4,821,490원) + 농협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786,841,116원) + 확정지연손해금 12,681원 +

법적절차비용 1,708,478원] 및 그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미회수 대위변제금 166,793,02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4. 11. 28.부터, 농협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786,841,11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4. 12.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5. 7. 9.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A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 A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② 피고 A은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제1 내지 4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 발생 약 2개월 전인 2014. 8. 17.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 무렵인 2014. 10.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디오존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디오존 및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원고가 2014. 11. 28. 및 2014. 12. 5. 디오존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합계 955,355,302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A의 채무초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예약,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의 적극,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 A은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을 체결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적극재산

1	이 사건 제1부동산	548,627,500원
2	이 사건 제2부동산	
3	이 사건 제3부동산	13,000,000원
4	이 사건 제4부동산	750,000,000원
합계	1,311,627,500원	

나) 소극재산

1	기업은행(논현남, 2013. 4. 12.자 신용대출)	35,000,000원
2	기업은행(논현남, 2014. 9. 5.자 신용대출)	30,000,000원
3	농협은행(송림동)	210,000,000원
4	기업은행(본부총괄)	540,400,000원
5	농협은행(본부총괄)	704,000,000원
6	부산은행(본부총괄)	97,459,000원

1	기업은행(논현남, 2013. 4. 12.자 신용대출)	35,000,000원
7	기술신용보증기금	950,000,000원
8	E	150,865,313원
9	F	100,000,000원
10	G	85,000,000원
합계	2,902,724,313원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예약,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디오존의 신용보증사고를 전후하여 피고 B, C, D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을 체결한데 비추어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추인할 수 있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 C, D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A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위 피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은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인데, 위 피고들이 지인들인 관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디오존의 부도 무렵에야 당초의 차용약정을 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재산이 아니어서 이 사건 매매예약,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과 위 피고들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피고 B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각 부동산을 4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까지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548,627,500원임에도 위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도 없이 4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만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00,000,000원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 10. 7.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매매절차와는 차이가 있는 점, ②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피고 A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 A이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시세보다 염가에 매도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 B로서는 피고 A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A은 디오존이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한 2014. 10. 7. 당일에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

피고 C는, 자신은 피고 A의 오빠의 처로서 피고 A에게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빌려주는 등 피고 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A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거래가 어려워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는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피고 A이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시가가 얼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분소유권에 불과하여 처분이 어려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였던 사정을 통하여 피고 A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 A의 오빠의 처로서 인척관계에 있어 피고 A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는 디오존이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한 2014. 10. 7. 당일에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

피고 D는, 자신은 피고 A에게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 당시 이 사건 제4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였는데, 당초의 약속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일 뿐 그 과정에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는 1999. 7. 28.부터 2011. 4. 1.까지 디오존의 H로 근무하였으므로 디오존이나 피고 A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D가 피고 A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이 사건 제4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③ 나아가 피고 D는 디오존이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한 2014. 10. 7. 이후인 2014. 10. 14.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매매예약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4. 10. 7. 접수 제75311호로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0. 7. 접수 제108021호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4. 접수 제230635호로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종원

판사한동석

판사박민

별지